

중앙소방악대 편성·운영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소방청이 운영하는 중앙소방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중앙소방악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중앙소방악대(이하 "악대"라 한다)의 운영과 악대 대원(이하 "악대원"이라 한다)의 임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.

제3조(설치) 악대는 소방청에 설치하고 연습실 및 악기실은 중앙소방학교에 둔다.

제4조(임무) 악대는 정부 또는 소방청 주관 주요행사 등 제8조제2항에 따른 행사에 참여하여 악기를 연주함을 임무로 한다.

제5조(편성) ① 악대는 소방청 또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소속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하며, 악대인원 및 악기편성은 별표와 같다.

② 악대원은 연주역량 및 악대의 악기편성 등을 고려하여 악대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한다.

③ 악대의 대장(이하 "악대장"이라 한다)은 악대원 중에서 악대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소방청장이 임명하며, 악대에는 원활한 악대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요원을 둘 수 있다.

④ 악대장은 악대원 중에서 지휘자를 선정하되, 행사 성격에 따라 지

도교수를 지휘자로 할 수 있다.

제6조(운영) ① 악대 운영에 관한 업무는 화재예방국장이 총괄한다.

② 연주연습 및 행사지원 등 악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악대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.

③ 악대원은 본인이 소속된 기관에서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, 정기연습·행사참여 등 필요시 출장 조치하여 운영한다.

제7조(복제) 악대는 행사 연주 시 「소방공무원 복제 규칙」 또는 「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」에 따른 정복과 예장계급장, 약장 등을 착용한다.

제8조(연습 및 행사참여) ① 악대 연습은 중앙소방학교 교육과정 운영(연 2회 이상)으로 정기 합주연습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, 악대 지원행사가 있을 경우 또는 필요시 수시연습을 할 수 있다.

② 악대는 다음 각 호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.

1. 정부 또는 소방청 주관 주요행사
2. 유관기관 또는 시·도 소방본부 주요행사
3. 대국민 소방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
4. 자선 및 사회봉사 목적의 행사
5.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
제9조(지도교수 위촉) ① 악대원의 연주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.

② 지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
③ 지도교수는 악대 연습 및 워크숍, 행사 등에 참여하여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.

④ 지도교수가 정기연습 및 워크숍, 행사 등에 참여하여 악대 및 악대원을 지도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악대원의 선발) 악대원은 매년 1회 이상 선발하며, 필요시 수시로 선발할 수 있다.

② 악대원 중 행사 참여인원은 행사의 규모 등에 따라 악대장이 선정한다.

③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악대원이 적극적으로 악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
제11조(악대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악대의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악대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1. 위원장 : 소방청 화재예방국 생활안전과장
2. 부위원장 : 악대장
3. 위원 : 시·도 악대 대표자

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운영한다.

1. 악대원 선발 및 자격상실 여부 결정
2. 유관기관 요청 행사의 참여 여부 결정
3. 위원장이 필요하고 인정하거나, 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

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**의결한다**.

⑤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며, 대면회의 또는 영상회의로 진행한다.

제12조(악대원의 의무) 악대원은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성실히 행사에 참여하여 악대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제13조(지원신청) 악대원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악대원 선발 시 별지 서식의 중앙소방악대 지원신청서를 소방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4조(악대원의 자격상실)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악대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1. 본인이 악대 활동을 더 이상 희망하지 않는 경우
2. 정당한 사유없이 악대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
3. 악대의 화합을 해치거나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

제15조(포상) 소방청장은 악대 활동이 탁월하거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악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제16조(예산지원) 소방청장은 악대원의 교육 및 악대 운영·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7조(유효기간) 이 훈령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악대규모에 따른 악대인원 및 악기편성(제5조제1항 관련)

인 원 악 기 명	24인조	30인조	36인조	50인조	비 고
피콜로			1	2	
플룻	1	1	2	3	
클라리넷	3	4	4	5	
바순			1	2	
엘토색소폰	2	3	3	4	
테너색소폰	2	2	2	4	
트럼펫	4	5	5	6	
트럼본	3	4	4	5	
유포늄	2	2	3	4	
호 른	2	3	3	4	
튜바	1	2	2	3	
수자폰	1	1	1	2	
스네어드럼	1	2	2	3	
베이스드럼	1	1	1	1	
글로젠슈펠			1	1	
심벌즈	1	1	1	1	

중앙소방악대 지원신청서

사 진 (3×4)	소 속		직 급	
	성 명		생 월 일	
주 소				
연 락 처				
이메일(E-mail)				
연주악기				
보유악기				
주요 경력	기 간	주요 경력사항		

「중앙소방악대 편성·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13조에 따라 중앙소방악대에 지원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소방청장 귀중